[서식 예] 선박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



선박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신청

채 권 자 〇〇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.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채무자 겸 소유자 ⟨◇⟨◇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)

전화 •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선 장 ◈◆◆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선장의 현재지: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○

청구채권의 표시

원금 ○○○원 및 이에 대한 20○○. ○. ○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○○%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

경매할 선박의 표시 : 별지목록 기재와 같음

신 청 취 지

- 1.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채권의 변제를 위하여, 채무자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,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.
- 2. 채무자는 위 선박을 ○○○항에 정박하여야 한다.
- 3. 귀원소속 집행관은 위 선박의 선박국적증서 기타 항해에 필요한 문서를 수취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라는 재판을 구합니다.

신 청 이 유



- 1.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20○○. ○. ○. 금 ○○○원을 이자는 연 ○○%, 갚을 날짜는 1년 뒤로 정하여 빌려 주면서 위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에 대하여 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20○○. ○○. ○. 접수 제○○○호로, 채권최고액 금 ○○○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.
- 2.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무를 갚을 날짜가 지났음에도 전혀 갚지 아니하였으므로, 채권자는 여러 차례에 걸쳐 위 채무를 갚을 것을 독촉하였으나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채무를 갚지 않고 있습니다.
- 3.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대여금을 받기 위하여 이미 설정된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대한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기에 이 른 것입니다.

첨 부 서 류

1. 선박등기부초본	1통
1. 선박정박증명	1통
1. 출항준비미완료보고서	1통
1. 차용증	1통
1. 근저당권설정계약서	1통
1.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영수필확인서, 영수필통지서	각 1통
1. 집행비용예납서	1통
1. 송달료납부서	1통
1. 선박목록	30통

20 O O O O O (서명 또는 날인)

○○지방법원 ○○지원 귀중



선박의 표시

선박의 종류와 명칭 기선 제〇〇〇호

선적항(또는 선적국) ㅇㅇ항

선 질 강(鋼)

총 톤 수 000t

순 톤 수 OOOt

기관의 종류 및 수 디젤발동기 ○기

추진기의 종류 및 수 나선추진기 〇개

진수연월일 2000.0.0.

정박장소 ㅇㅇㅇ항

소유자 ◇◇◇

선장 ◆◆◆

임대차 없음. 끝.

			or.kr
│ │ 제출법원	압류 당시에 그 선박여	이 있는 곳을 줘	관할하는 지방법원(민사집)
	제173조)		WWW.
제출부수			민사집행법 제269조, 제172
	신청서 1부	관련법규	조 내지 제186조, 제264조
			내지 제268조
불복절차 및 기간	(신청인)		
	·경매신청 기각·각하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민사집행법 제83		
	조제5항, 제268조)		
	·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(민사집행법 제15		
	조제2항)		
	(이해관계인)		
	·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		
	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 제86조제1항, 제		
비 용	265조). • 의지액 : 5,000원(☞	 민사정수서류에	분의 이지앤)
	· 인지액 : 5,000원(□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) · 송달료 : (이해관계인 수+3)× 000원(1회송달료) ×10회분		
	·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: 15,000원(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2		
	호나목) 및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		
	(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)납부		
	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비용 등의 각종 수수료예납
기 타			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
	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함(민사집행법 제180조).		
	·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		
	국적증서 등을 넘겨받지 못하고,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		
	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음(민사집행법		
	제183조).		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집행 >> 강제집행